

# 개발제한구역 수질관련 해제기준 완화

 추진부서 | 경기도 공간전략과 ☎ 031-8008-6161

## 개선배경



- 모든 개발제한구역은 표고, 경사도, 농업적성도, 식물상, 임업적성도, 수질 등 6개의 환경관련 항목을 1에서 5등급으로 평가하고, 그중 최고 등급으로 종합등급이 결정되는데, 종합등급이 1~2등급인 경우는 해제가 불가함
-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지역들은 다른 지표와 상관없이 수질 1~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. 왜냐하면 물환경 목표기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종권역별로 고시하는데, 팔당지역은 당연히 목표기준과, 이와 연동되는 폐수배출시설 배출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
- 따라서, 대상지의 훼손상태나, 보전 필요성 등과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하여 정비나 계획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해제가 불가한 수질 1~2등급지는 경기도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1,157km<sup>2</sup> 중 22%인 약 246km<sup>2</sup>에 달함

### 〈 구리시내 한강변 1~2등급지내 훼손 현황 〉



☞ 수질은 개발로 훼손되는 농업·임업·식물상 등 타 평가항목과 달리, 적절한 개선대책을 통해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

## 개선내용



### 개선 전

표고·경사도·농업적성도·임업적성도·식물상·수질 등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1~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



### 개선 후

수질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해제 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**해제 및 그로 인한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1~2등급지를 포함하여 해제할 수 있음**

## 추진과정



- '22. 7.18. 불합리한 GB 환경평가등급 등급 사례조사
- '22. 8.23. GB환경평가등급(수질) 제도개선(안) 마련 및 방침결정
- '22. 8.23. 국토부 방문 제도 개선사항 설명 및 협의
- '22. 9.30. GB환경평가등급(수질) 관련 제도개선 건의(道⇒국토부)
- '22.12.22. GB해제 제도 개선 국토부-시·도 과장급 회의
- '23. 7.24.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 시행

## 개선효과



- 수질 1~2등급지가 대부분인 경기동북부 팔당지역 개발사업이 적절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만 수립을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짐
- 경제적으로는, 구리, 하남시 등 경기 동북부에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했던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기대됨
- 환경적으로도,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적절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으로 불법 난개발된 개발제한구역이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며, 수질개선 기술도 더욱 발전하게 되면서 팔당상수원에 대한 효과적인 수질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

